

Contents

국가회계 동향

재정통계 동향

오피니언

센터 동향

공지사항

01

국가회계 동향

1 국가회계 국내동향

가.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친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2015년 5월 31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재무결산 결과 2014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회계·기금을 통합한 재정상태표상 자산은 1,756.8조원, 부채는 1,212.7조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44.1조원이다. 또한 2014회계연도 재정운영표상의 재정운영순원가는 265.1조원이며, 비교환수익 등 257.2조원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7.9조원이다.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은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요약 재정상태표〉

(단위: 조원, %)

	'14년(A)	'13년(B)	증감액 (C=A-B)	증감률 (C/B)
자산합계(a)	1,756.8	1,666.3	90.5	5.4
I. 유동자산	317.3	291.1	26.2	9.0
II. 투자자산	615.9	563.1	52.8	9.4
III. 일반유형자산	514.6	508.6	6.0	1.2
IV. 사회기반시설	300.1	294.4	5.7	1.9
V. 무형자산	1.1	1.2	△0.1	△8.3
VI. 기타비유동자산	7.8	7.9	△0.1	△1.3
부채합계(b)	1,212.7	1,117.9	94.8	8.5
I. 유동부채	119.1	108.6	10.5	9.7
II. 장기차입부채	381.9	347.8	34.1	9.8
III. 장기충당부채	682.3	633.8	48.5	7.7
- 연금충당부채	643.6	596.3	47.3	7.9
- 퇴직수당충당부채	31.7	31.5	0.2	0.6
- 기타	7.0	6.0	1.0	16.7
IV. 기타비유동부채	29.4	27.7	1.7	6.1
순 자산(a-b)	544.1	548.4	△4.3	△0.8

나. 국가회계제도 개선 T/F 운영

기획재정부 재무회계팀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국가회계제도 개선을 위한 ‘국가회계제도 개선 T/F(이하 ‘T/F’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T/F는 분야별로 ‘법령·예규’, ‘결산보고서’ 및 ‘감사원 연례적 지적사항 및 디브레인 시스템’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이러한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회계기준과 운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T/F에서는 기존에 발굴된 과제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내 개선이 필요한 과제부터 순차적으로 개선안을 마련, 10월경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차 T/F(5.26)를 시작으로 2차(6.9), 3차(6.24) T/F를 통하여 각 과제별 개선 필요사항을 총괄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령·예규’ 22개, ‘결산보고서’ 8개의 세부 과제를 선정하였다. 디브레인 시스템 관련 개선과제는 중앙관서 결산 실무자의 의견과 자체 발굴과제를 취합하여 세부과제를 선정하였고, 반영시기 및 우선순위에 대하여 ‘dBrain 운영단’과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다. 2015년 국가회계교육 운영

기획재정부는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9차례에 걸쳐 53개 부처 결산담당 공무원 3,000명을 대상으로 국가재무제표 활용 등 ‘2015년도 국가회계교육’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국가회계교육은 회계이론, 회계실무, 회계·결산전문, 사이버교육, 순회교육 등 5개 과정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2010년부터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을 위해 매년 회계교육을 운영 중이다. 회계이론과정은 일반 공무원이나 신규 회계업무 담당자 등 기초 회계 지식이 필요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회계원리와 회계순환과정, 기초회계실습 등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계실무과정에서는 수입, 지출, 국유재산·물품, 조달 등 회계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예산과 재무회계의 연계, 업무 담당자별 오류사례 및 처리방법 등을 교육한다. 회계·결산전문과정은 각 부처의 결산 총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급 교육과정으로 내부거래실무 등 결산 프로세스에 따른 세분화된 교육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회계교육이 국가재무제표 작성 교육에서 활용 교육으로 전환되어, 국가재정상태를 체계적으로 접근해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적 안목이 배양될 것으로 보고 있다.

2 국가회계 해외동향

가.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동향

1) IPSASB, ‘사업성과 보고’ 실무적용지침 발표¹⁾

IPSASB(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실무적용지침 제3호 ‘사업성과 보고(Reporting Service Performance Information)’를 발표하였다. 실무적용지침 제3호는 사업성과 보고에 관한 모범 사례들을 제공한다. 본 실무적용지침에서는 재무제표에 추가되는 정보를 포함한 공공부문 회계실체들의 특수한 보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IPSASB 위원장인 Andreas Bergmann에 따르면 대부분의 공공부문 회계실체의 주된 기능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사업성과는 공공부문 회계실체가 제공한 공공서비스와 그에 따른 자원의 효율적·효과적인 사용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정보이며, 실무적용지침 제3호는 이미 사업성과를 보고하고 있는 실체들에는 해당 정보의 질적 향상을 돕고, 아직 사업성과를 공시하지 않는 실체들에는 유용한 체계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실무적용지침 제3호는 사업성과 보고 표시에 적용될 원칙과 표준화된 용어의 정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성과 보고실체와 보고기간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또한 이 실무적용지침에서는 보고실체의 공공서비스 성과 목표 달성을 보여주는 성과지표와 공시 정보에 대한 기본적 공시사항 등을 제공한다.

2) IPSASB, 공익위원회 등 설립²⁾

IPSASB는 2015년 3월 2일 발표된 IPSASB 거버넌스 검토그룹(이하 ‘검토그룹’라 한다)의 향후 IPSASB의 거버넌스에 관한 최종 권고사항을 받아들였다. 이 권고사항은 IPSASB의 기준제정 활동을 지원하게 될 공익위원회(the Public Interest Committee)와 자문위원회(the Consultative Advisory Group)의 설립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1) (출처) IPSASB Press Releases/News (Mar 31, 2015)

<http://www.ifac.org/news-events/2015-03/ipsasb-publishes-recommended-practice-guideline-reporting-service-performance-in>

2) (출처) IPSASB Press Releases/News (Mar 02, 2015)

<http://www.ifac.org/news-events/2015-03/ipsasb-welcomes-governance-review-group-recommendations-including-establishment->

검토그룹은 IPSASB의 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조직되었다. 검토그룹 의장은 국제통화 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은행(World Bank)이 공동으로 맡고 있으며, 위원은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와 국제감사기구(INTOSAI)의 대표들로 구성되었다.

IPSASB 위원장인 Andreas Bergmann은 IPSASB는 공공부문에서 국제적인 기준 제정기구로서 명성이 커지고 있으며, IPSASB의 기준들은 공공부문 재무보고에 관한 벤치마크가 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러한 거버넌스의 정비는 IPSASB가 독립적이며, 각국의 의견을 신중히 고려하여 기준을 제정하고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검토그룹은 공익위원회에 대한 위임사항 초안을 마련하였고, '15년 3월 말에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나. 미국 연방회계기준 자문위원회(FASAB) 동향

1) 진행중인 프로젝트 세부 내용 논의

미국 연방회계기준자문위원회(FASAB: Federal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Board, 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는 재무보고 개념체계 정립, 국방부 이행지침 요청 프로젝트 등이며, 2015년 4월 29~30일간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5년 4월 29일~30일간 진행된 FASAB의 회의 내용 〉

프로젝트	내 용
Concepts - The Financial Report(재무보고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보고 모형 개념체계
DoD Implementation Guidance Request Project (국방부 이행지침 요청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고와 군수품(OM&S), 비축물자의 기초 잔액' 공개초안 SFFAS 제6호 '유형자산 회계'와 SFFAS 제35호 '일반유형자산의 역사적 원가의 추정(SFFAS 제6호, 제23호 개정)' 해석서 공개초안
Leases(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스 기준서의 공개초안에 대한 검토
Public Private Partnerships (민관협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관협력사업: 공시사항'의 공개초안 소위원회의 공개초안 개선 요청사항 검토

2) 재무보고 개념³⁾

위원회는 이상적인 재무보고 모형의 주요한 측면들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으며, '15년 4월에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는 재무보고 모형 개념체계의 개요를 검토하였다. 이 개요는 위원회가 '15년 2월 회의에서 6가지의 관련주제* 논의 계획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위원회는 논의 주제들이 재무보고 모형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 연방정부 수탁책임성의 두 가지 수준, 정부 간 재정적 의존,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간 관계, 예산 보고, 성과 보고, 원가계산

위원들은 다양한 주제들에 대하여 상의하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에 따라서 작성된 재무보고서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하지 않은(non-GAAP) 자료들의 연관성을 분명하게 해준다고 보고 있다.

3) 국방부 이행지침 요청 프로젝트⁴⁾

위원회는 4월 위원회에서 연방재무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재고와 군수품, 비축물자의 기초 잔액 (Opening Balances for Inventory, Operating Materials and Supplies (OM&S) and Stockpile Materials)'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공개초안은 기준서 제3호 '재고자산과 관련자산 회계(Accounting for Inventory and Related Property)'에 따라 재고와 군수품(OM&S), 비축물자의 기초 잔액 측정 시 대체적 방법의 사용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공개초안에 대하여 검토와 논의를 거친 후 기준서의 편집과 관련된 수정에 동의하였으며, 공개초안은 최종 수정을 거쳐 6월 초에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기준서 제6호 '유형자산 회계(Accounting for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및 제35호 '일반유형자산의 역사적 원가의 평가(Estimating the Historical Cost of General Property, Plant, and Equipment)'의 해석서 공개초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논의는 유형자산의 역사적 원가 평가 시 자본적 지출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건설 중인 자산의 역사적 원가를 평가액에 반영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위원회는 공개초안에 대하여 대체로 동의하였으나 새로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의 처리 방법에 대하여 좀 더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하였다. 6월 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수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3) (출처) <http://www.fasab.gov/projects/active-projects/concepts-the-financial-report/>

4) (출처) <http://www.fasab.gov/projects/active-projects/dodguidance/>

4) 리스⁵⁾

'15년 4월 회의에서는 리스기준서의 최초 공개초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FASAB 조사연구원들은 리스기준서가 연방실체 간의 리스계약을 포함한 모든 리스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지침이 될 것임을 언급했다. 위원들은 연방실체 간 리스계약의 경우 현행 운영리시지침과 유사하게 회계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동의하였다.

공개초안은 관련 용어의 정의와 함께 리스 이용자 및 리스 제공자가 연방실체 간 리스계약의 인식과 측정에 대하여 적용할 구체적인 규정들을 담고 있다. 조사연구원들은 공개초안에 표현된 용어들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를 위원회에 요청하였고, 위원회는 공개초안 일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명확한 표현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사연구실은 또한 지방정부회계기준위원회(GASB;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의 리스기준에 관한 사전검토보고서(Preliminary Views) 중 연방회계기준과 관련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견을 요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조사연구실은 용어를 GASB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FASAB 공개초안을 GASB 공개초안의 발표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발표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으며, 위원회는 리스기준 공개초안과 기준서의 공표 일정을 GASB의 일정과 맞추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GASB는 지금까지 리스기준 사전검토보고서에 관해 37개의 의견조회서를 수령하고 3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16년 2월에 공개초안을 발표한 뒤 '17년 초에 기준서를 공표할 예정이다.

5) 민관협력사업⁶⁾

위원회는 공개초안 '민관협력사업: 공시사항(Public-Private Partnerships: Disclosure Requirements)'과 관련하여 소위원회의 개선 요청사항 등 관련 의견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소위원회는 주로 공개초안에 제시된 정의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이유와 제안을 서면으로 제출한 공개초안 응답자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소위원회가 5년 이하의 협정 및 거래의 경우 민관협력사업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하여 이를 제외하는 경우 위험기반특성(Risk-based Characteristics)을 중심으로 하는 민관협력사

5) (출처) <http://www.fasab.gov/projects/active-projects/leases/index.html>

6) (출처) <http://www.fasab.gov/projects/active-projects/public-private-partnerships/index.html>

업의 정의를 변경시킬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소위원회는 그 밖에도 민관협력사업 정의에서 (1) 다른 정부나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보조금 (2) 해외 정부와의 협약과 거래 (3) 명목상의 자원공유 또는 부수적인 자원공유를 제외할 것과, 민관협력사업에 속하면서도 예산관리처(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규정 대상이 아닌 보조금에 대하여 위험기반특성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위원회는 소위원회가 민관협력사업의 정의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위험기반특성과 관련된 표현의 골자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지는 않았으나, 표현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부분들을 언급하였다.

02

재정통계 동향

1 재정통계 국내동향

가. 2013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기획재정부는 2015년 5월 「2013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를 발표하였다. 「2013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는 '86GFS에 따른 2013년도 중앙정부 결산 통합재정수지와 '01GFS에 따른 2013년도 일반정부 결산 재정수지를 공개하고 있으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3년도 중앙정부 결산 통합재정수지

(단위: 십억원, %)

구분	수입(A)	지출(B)	통합재정수지(A-B)
일반회계	205,264	191,631	13,633
기타특별회계	13,811	36,652	(22,841)
세입세출외	33	335	(301)
기금	92,267	67,939	24,328
기업특별회계	3,062	3,681	(619)
합계 (GDP 대비 %)	314,438 (22.0)	300,238 (21.0)	14,200 (1.0)

2) 2013년도 일반정부 결산 재정수지

(단위: 조원, %)

구분	중앙정부	지방정부				내부거래	일반정부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내부거래	합계		
수입(A)	392.4	170.9	54.0	△ 10.5	214.4	△ 122.4	484.4
(GDP 대비 %)	27.5	-	-	-	15.0	-	33.9
지출(B=C+D)	373.1	167.9	55.2	△ 10.5	212.6	△ 122.4	463.3
(GDP 대비 %)	26.1	-	-	-	14.9	-	32.4
비용(C)	360.7	141.4	51.9	△ 10.5	182.8	△ 122.4	421.1
비금융자산의 순취득(D)	12.4	26.5	3.3	-	29.8	-	42.2

구분	중앙정부	지방정부				내부거래	일반정부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내부거래	합계		
순운영수지 (A-C)	31.7	29.5	2.1	-	31.6	-	87.3
순융자/순차입 (A-C-D)	19.3	3.0	△ 1.2	-	1.8	-	21.1
(GDP 대비 %)	1.4	-	-	-	0.1	-	1.5

3) 2013년도 일반정부 자산과 부채

(단위: 조원, %)

구분	중앙정부	지방정부				내부거래	일반정부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내부거래	합계		
자산	1,758.3	1,045.3	85.7	△ 0.8	1,130.2	△ 11.5	2,877.0
(GDP 대비 %)	123.0	-	-	-	79.1	-	201.3
부채	524.2	44.6	10.8	△ 0.7	54.6	△ 11.5	567.4
(GDP 대비 %)	36.7	-	-	-	3.8	-	39.7

한편, 기획재정부는 일반정부 결산 재정수지의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재정수지 및 부채는 건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단위: GDP 대비 %)

구분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재정수지	1.5	△ 5.8	△ 5.8	△ 4.2	△ 8.2	0.2
부채	39.7	104.2	90.6	91.8	243.2	78.4

출처: IMF, *Fiscal Monitor*, 2014.10월, 한국은 정부 작성 통계 기준

2 재정통계 해외동향

가. OECD 국가의 재정수지 및 부채 현황

OECD는 2015년 6월 *OECD Economic Outlook No 97* 통해 OECD 국가의 일반정부 재정수지 및 부채현황을 공개하였다. 다음은 일반정부의 GDP 대비 재정수지(financial balance)의 비율 및 총금융부채(gross financial liability)의 비율 자료이다.

(단위: GDP 대비 %)

구분	일반정부 재정수지 (financial balance)			일반정부 총금융부채 (gross financial liability)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호주	△ 2.6	△ 1.4	△ 2.2	37.3	38.3	42.5
오스트리아	△ 2.2	△ 1.3	△ 2.4	96.7	95.1	96.3
벨기에	△ 4.1	△ 2.9	△ 3.2	120.3	117.6	129.8
캐나다	△ 3.1	△ 2.7	△ 1.6	95.9	92.3	94.8
체코	△ 3.9	△ 1.2	△ 2.0	58.2	57.9	57.1
덴마크	△ 3.7	△ 1.1	1.2	60.2	57.3	60.4
에스토니아	△ 0.2	△ 0.2	0.6	13.2	13.5	14.3
핀란드	△ 2.1	△ 2.5	△ 3.2	63.0	65.1	71.4
프랑스	△ 4.8	△ 4.1	△ 4.0	111.8	111.4	120.4
독일	0.1	0.1	0.6	86.3	81.6	82.3
그리스	△ 8.7	△ 12.3	△ 3.6	166.2	182.0	184.1
헝가리	△ 2.3	△ 2.4	△ 2.6	98.2	96.7	99.8
아이슬란드	△ 3.7	△ 2.0	△ 0.2	95.2	87.7	85.4
아일랜드	△ 8.1	△ 5.8	△ 4.1	120.8	128.9	116.5
이스라엘	△ 5.0	△ 4.1	△ 3.7	68.3	67.6	67.5
이탈리아	△ 3.0	△ 2.9	△ 3.0	138.1	144.8	158.5
일본	△ 8.7	△ 8.5	△ 7.7	215.4	220.3	226.0
룩셈부르크	0.1	0.9	0.6	29.6	29.7	31.3
네덜란드	△ 4.0	△ 2.3	△ 2.3	77.9	77.0	81.8
뉴질랜드	△ 1.6	0.3	1.4	41.8	40.8	39.2
노르웨이	13.8	11.3	9.1	34.5	35.0	32.6
폴란드	△ 3.7	△ 4.0	△ 3.2	61.2	62.3	65.8
포르투갈	△ 5.6	△ 4.8	△ 4.5	137.0	141.8	150.4
슬로바키아	△ 4.2	△ 2.6	△ 2.9	57.9	60.8	60.0
슬로베니아	△ 4.0	△ 14.9	△ 4.9	60.4	79.2	97.6
스페인	△ 10.3	△ 6.8	△ 5.8	91.0	102.0	115.8
스웨덴	△ 0.9	△ 1.4	△ 1.9	44.6	44.8	52.1
스위스	0.3	0.1	0.2	45.8	45.6	45.3
영국	△ 8.3	△ 5.5	△ 5.3	105.1	100.8	111.3
미국	△ 9.0	△ 5.7	△ 5.0	110.5	109.2	110.1
유로지역 (15개국) 평균	△ 3.6	△ 2.9	△ 2.4	103.9	104.9	111.5
OECD 평균	△ 5.8	△ 4.2	△ 3.7	110.3	110.3	113.8
한국	1.3	1.5	-	36.6	39.7	-

출처: stats.oecd.org, 한국은 정부 작성 통계 기준('14년 일반정부 재정통계는 '15년 12월 산출 예정)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재정수지는 2013년 GDP 대비 1.5%로 OECD 전체 평균 -4.2% 및 15개 EU 국가 평균 -2.9%에 비해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금융부채는 2012년, 2013년 각각 GDP 대비 36.6%, 39.7%로 OECD 전체 평균 110.3%, 110.3% 및 15개 EU 국가 평균 103.9%, 104.9%에 비해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03

오피니언 (1)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 ‘물 회계’ 도입 필요



배기수 충북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물’은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우리 인간의 몸 70%가 ‘물’이다. 가정용 식수로도 쓰이지만, 기업의 공업용수로도 쓰이고, 농작물의 재배에서도 매우 필수적인 자원이다. 해마다 발생하는 가뭄과 홍수로 인해 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무한하게 이용할 줄로만 알았던 ‘물’이 더 이상 무한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제인구행동 연구소는 2025년이면 34억명 정도가 ‘물 부족국가’ 또는 ‘물 압박’ 속에서 고통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경제포럼 수자원 이니셔티브 보고서에서도 ‘수자원 부도’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제는 ‘석유파동’이 아니라 ‘물 파동’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물’ 부족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공급에 비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물’ 수요도 증가하여 인구증가율보다 ‘물’ 수요는 2배 이상 가파르다. ‘물’ 부족 현상은 ‘물’을 둘러싼 갈등으로 심화하고 있다. 요르단강·메콩강·나일강 주변국들은 전쟁 일촉즉발 상황이다 (서울경제, 2015.4.16.).

우리나라도 ‘물’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1인당 가용 수자원은 전 세계 평균의 6분의 1 수준이고, 일본의 절반 수준인 연간 약 1,553t이다. 과거 100년간 한반도 지역 평균기온 상승률은 전 세계 평균(0.75)의 2배가 넘는다. ‘물을 물 쓰듯 하던’ 시대가 지나면서 전국 곳곳에서 ‘물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연합뉴스, 2015.4.23.). 마실 ‘물’ 확보를 위한 댐 및 취수장 건설과 ‘물값’ 갈등, 환경문제 등이 분쟁의 주요 원인이다. 대구와 경남, 부산 등 낙동강 수계 1천만 주민의 식수 공급에 혼란

을 주었던 구미 폐놀 유출사건, 댐이 없는 인천시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팔당취수장과 풍납취수장에서 공급받는 수돗물 원수 구입단가가 t당 126원으로 서울의 50원, 부산의 42원, 대구의 75원보다 비싸다. 또한 경기도 평택과 용인, 안성은 취수장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러한 ‘물’ 관리에 대한 갈등은 지방분권화가 되면서 지자체들의 수자원 관리·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국가’에서 ‘지역’으로 전환되면서 ‘물’ 분쟁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물’ 관리의 기본은 공급과 수요에 대한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재 상태를 인식하고 측정·보고하여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물’ 자원이 생성되면 생성되는 결과물과 그것이 어디서 생겼는지 동시에 기록하고, ‘물’이 사용되면 왜 사용되었고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동시에 기록하는 복식부기 시스템을 갖춘다면 ‘물’ 자원을 매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즉, 이러한 ‘물 회계’를 통해 ‘물 재무상태표’와 ‘물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현재 상태에서 ‘물’ 자산이 얼마나 있고 앞으로 얼마나 쓰일 것인지, ‘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국가회계를 통해 국가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듯이, ‘물 회계’를 통해 ‘물’에 대한 정확한 보유량, 사용할 곳을 국가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고 파악하여 ‘물 파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한다. 지역별로 ‘물’ 부족이 심각한 호주에서는 지역별 ‘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07년부터 ‘국가 물 회계 개발 위원회’를 설립하여 2008년에는 ‘호주 기상청’을 총괄로 지정하였다. 이후 2010년에는 ‘물 회계 기준서’를 배포하고 2014년부터 물 회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등 ‘물’ 관리에 있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물 회계’에서 가장 핵심은 발생주의 복식부기 시스템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도입하여 국가재무제표를 2011년부터 작성하여 공시하고 있어, ‘물 회계’ 도입에는 그리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지금부터라도 ‘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물 회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가의 중요 자원인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 본 뉴스레터의 일부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03

오피니언 (2)

GFSM 2014의 이해(1) : 기관단위, 유량 및 저량, 회계규칙



정성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IMF에서 발간한 『재정통계 매뉴얼 2014』(이하 GFSM 2014)는 재정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거시경제통계체계로서, 통계자료 작성을 위해 사용되는 경제 및 통계의 보고 원칙과 의미 있는 수지항목(balancing items) 산출에 적합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른 거시경제통계 체계(2008 SNA, BPM6, MFSM, PSDS, 2013 EDS Guide, IPSAS 등)와도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번 호부터 한글판 매뉴얼 발간에 발맞춰 GFSM 2014 주요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더불어 경제학자(재정학자), 행정학자, 회계학자 등이 모여 실시한 강독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학제 간 논의 사항 중 주요 이슈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1. GFSM의 변천

GFSM은 재정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1986년도 초판이 발간된 이후 2001년 제2판이 출간되었으며, 최근 발간된 GFSM 2014는 제3판으로 볼 수 있다. 이 매뉴얼의 변천과정은 회계·재정제도 변화의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가장 큰 변화는 GFSM 1986이 경제적 사건을 현금주의에 따라 기록하도록 한 반면, GFSM 2001은 발생주의를 따르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에 현금주의에 기반한 종합흑자/적자 같은 단일 수지항목에 초점을 맞추던 것에서 유량(flow)과 저량(stock) 개념 도입 및 이의 결합을 통해 순융자, 순차입, 총/순운영수지 등 다양한 수지항목(Balancing items)을 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부

부문의 포괄범위 개선, 출연금 및 비금융자산 거래의 인식방법의 변화, 거래의 경제유량 및 순자산 개념의 도입, 자산과 부채의 가치평가 방법 개선 등 여러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다.

GFSM 2014는 발생주의에 기반을 둔 GFSM 2001을 토대로 하여 십여년간 실무적인 통계 작성 및 분석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업데이트를 진행하였다. 예를 들면, 특정한 주요 계정들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였고, 분류가 모호한 사례에 대한 분류 기준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일부 계정을 세분화하는 등 국제비교 및 재정분석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GFSM 2014는 본문 10장, 본문(제4장 및 제6장)에 대한 부속서(annex) 2장, 부록(appendix)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본문 제1장부터 제3장까지는 GFSM에 대한 소개 및 통계의 작성 및 이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기관단위와 부문, 경제적 유량과 저량, 회계 규칙 등에 대해 설명한다. 제4장에서 GFS 체계에서 작성되는 대표적인 보고서와 재정분석에 대한 활용방법(제4장 부속서)을 설명한다. 제5장과 제6장에서는 운영보고서를 구성하는 수익과 비용 및 그 하위 계정에 대해 설명하며, 특히 제6장 부속서에서는 정부지출을 기능별로 분류한 COFOG(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제7장부터 제9장까지는 대차대조표와 관련 계정, 비금융자산의 거래, 금융자산과 부채의 거래를 설명하며, 제10장에서는 거래의 경제유량의 개념과 분류 방법을 설명한다. 부록에서는 GFSM 1986, GFSM 2001로부터 GFSM 2014까지의 변천과정, 사회보호 개념의 구체적 설명, 채무 관련 세부 사례, 최근 이슈(cross-cutting), 지역 협약, GFS와 국제공공부문 회계기준(IPSAS) 및 다른 거시경제 통계들과의 비교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2. 기관단위와 부문

GFS에서 부문분류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통계단위는 기관단위(institutional unit)이다. 기관단위는 독자적으로 자산을 소유하고 부채를 부담하며, 경제활동 및 다른 실체와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경제적 실체로 정의된다. 기관단위를 식별하는 것은 부문을 정의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이며, 거래상대방과 저량의 식별, 연결(consolidation) 등을 가능하게 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기관단위의 종류로는 가계와 기업, 준기업, 비영리기관, 정부단위 등으로 구성되는 법적·사회적 실체가 있다. 또한 거주성(residence)을 기준으로 거주 기관단위와 비거주 기관단위로 구분할 수도 있다. 즉, 한 나라의 경제는 거주 기관단위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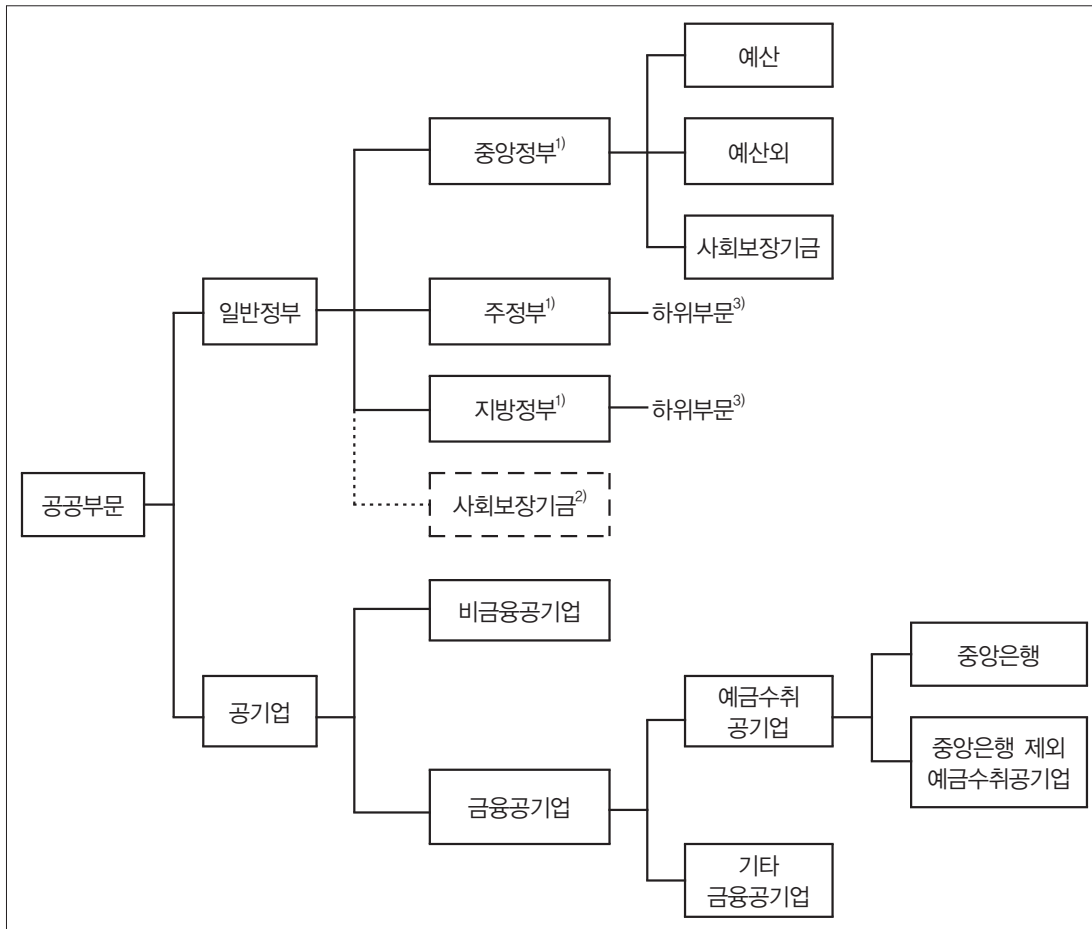
〈기관단위와 제도단위〉

‘기관단위(institutional unit)’는 경제학, 정부, 한국은행 등에서 ‘제도단위’라는 용어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가계, 기업, 일반정부 등을 제도적 단위라고 칭하는 것이 이해하기 더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기관단위’를 사용하게 되었다. 가계나 회계·기금 등을 기관으로 보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여기에서의 ‘기관’은 기업이나 특정 기관을 칭할 때의 기관과는 다른 의미라고 협의하였다. 즉, ‘기관단위’와 ‘제도단위’는 같은 개념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다만 ‘기관부문(institutional sector)’은 기관단위의 ‘기관’과 ‘부문’이 복합되어 있어 혼동의 여지가 있으므로 ‘부문’으로 간결하게 번역하였다.

또한 한 나라의 경제는 여러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부문이란 경제적 목적, 기능, 행위에 따라 유사한 종류의 기관단위들을 그룹화한 것이다. 각 부문은 해당 경제권에 거주하고 있고 다른 부문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다수의 기관단위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 경제는 비금융기업부문, 금융기업부문, 일반정부부문, 가계부문, 가계지원 비영리기관 등의 5개 부문으로 구분되며, 이 중 가계지원 비영리기관은 전문가 단체, 학회, 정당, 종교단체, 구호기관, 연구기관 등이 해당된다.

각 부문은 하위부문으로 세분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세분화는 경제분석의 유용성을 높여 주고, 특정 기관단위 그룹이 정책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세분화는 분석의 유형, 정책결정자의 필요, 자료의 유무, 국내의 경제적 환경과 제도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GFS에서는 [그림 1]의 공공부문 중 일반정부에 해당하는 통계를 작성하는 반면, 공공부문부채통계(PSDS)는 비금융공기업 및 금융공기업을 포괄하는 범위의 통계를 작성한다.

[그림 1] 공공부문과 주요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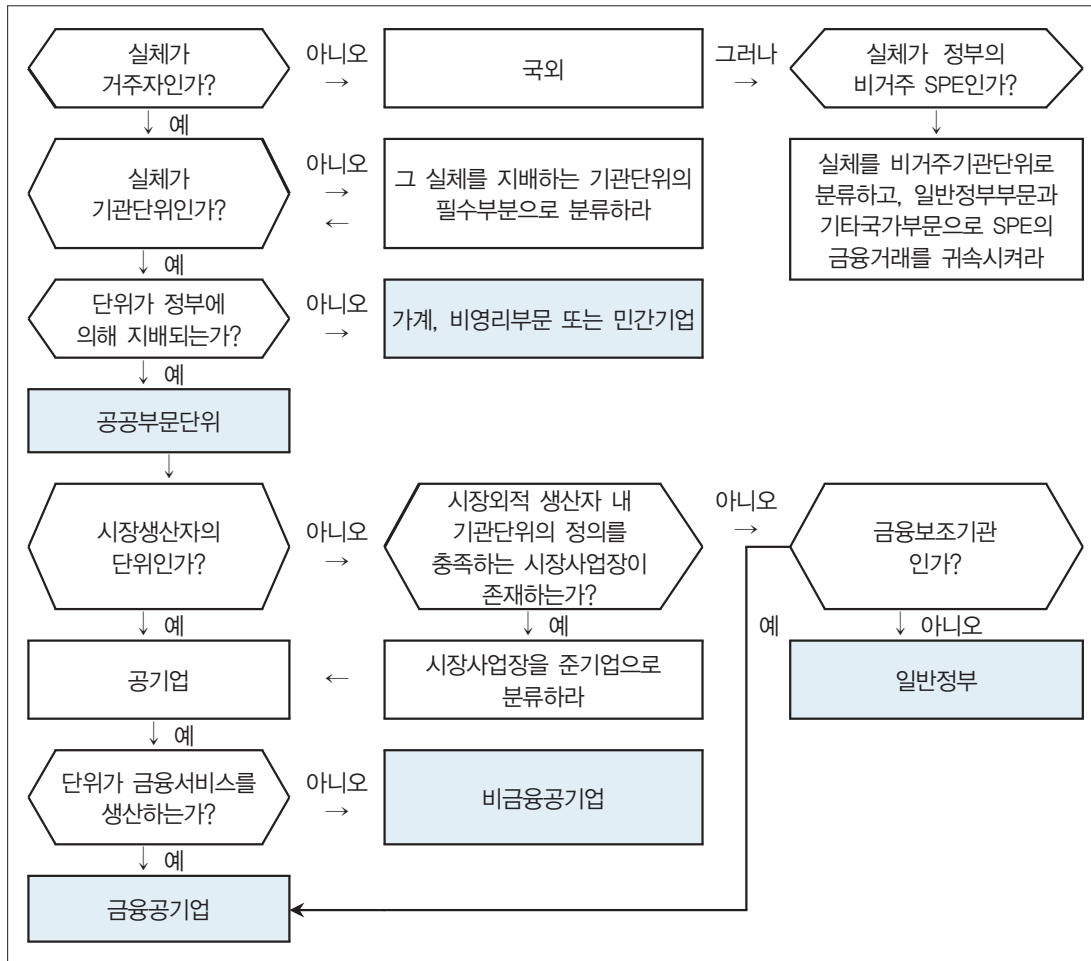
주: 1) 사회보장기금이 포함됨

2) 대안적으로 사회보장기금은 박스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것과 같이 분리된 하위부문으로 집계될 수 있음

3) 예산단위, 예산 외 단위, 사회보장기금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존재할 수 있음

또한 GFSM 2014는 [그림 2]와 같이 부문 분류의 명확한 기준으로 거주성, 기관단위 여부, 정부의 지배성, 시장성 등의 다양한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2] 공공기관의 부문 분류에 관한 의사결정트리



3. 경제적 유량, 저량 및 회계규칙

경제적 유량은 경제적 가치의 창출, 변환, 교환, 이전 또는 소멸을 의미한다. 이는 단위가 보유하는 자산, 부채, 순자산의 규모나 구성 또는 가치의 변동 등을 수반한다. 경제적 유량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기관단위 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기관단위 내의 행동인 '거래(transaction)'와 거래에서 비롯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 규모 또는 가치의 변동인 '거래 외 경제유량(other economic flow)'이다.

거래는 다시 교환, 이전 등의 화폐성 거래와 물물교환, 현물보수, 현물이전, 내부거래 등의 비화폐성 거래로 구분된다. 거래와 경제유량은 보유손익과 보유손익을 제외한 상대가격 및 기술 변동, 채무면제, 재해손실 등에 해당하는 자산·부채 규모의 기타 변동으로 구분된다.

저량은 특정 시점에서의 자산과 부채의 총보유액을 의미하며, GFS 체계에서 대차대조표(국가 결산보고서 중 ‘재정상태표’에 해당)에 기록된다. 유량과 저량은 다음의 관계가 성립한다.

$$S_0 + F = S_1$$

이 식에서 S_0 은 보고기간 기초 저량, S_1 는 보고기간 기말 저량, F 는 보고기간 동안 특정 저량에 영향을 미친 유량의 순계를 의미한다. 즉, 기말과 기초의 모든 저량 변화는 보고기간 동안의 유량을 통해 완전히 설명될 수 있다.

또한 GFS에서는 다음의 7가지 회계규칙이 적용된다.

- 경제적 사건은 복식부기 원칙으로 기록된다.
- 유량의 기록은 원칙적으로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기록되며, 예외적으로 원인행위기준(commitments basis), 지급일도래기준(due-for-payment basis), 현금주의 등으로 기록되기도 한다.
- 모든 유량과 저량은 시장가격(현행 또는 경상 교환가치)으로 측정되어야 하며, 유량은 발생한 시점의 시장가격으로, 저량은 대차대조표 기준일의 시장가격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경상 시장가격과 현행 시장가격〉

current market prices는 경제학에서는 ‘경상 시장가격’, 회계학에서는 ‘현행 시장가격’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같은 의미이므로 혼용하거나 병기하였다.

- 비거주자와의 거래 등의 경우라도 단일 통화단위로 작성되어야 한다.
- 산출지표(derived measure)는 총액(aggregate)과 하나의 총액에서 다른 총액을 차감하여 얻어지는 수지항목(balancing item)항목으로 구성된다.
- 유량과 저량은 총액이나 순액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순액으로 나타낸다는 것은 한 유형의 유량이나 저량의 합계에서 유사한 유형의 합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GFS에서 수익이나 비용은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표시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재고자산의 변동, 금융자산 및 부채의 취득 또는 처분, 거래외 경제유량 등은 순액으로 표시된다.

- 일련의 기관단위를 마치 하나의 기관단위인 것처럼 취급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것을 연결(consolidation)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연결은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이중계산을 없애는 작업이다. 연결은 조정이 일어나는 양편(two sides)에서 대칭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지항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08 SNA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민계정에서 기관단위들의 통계가 연결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각각의 통계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GFS는 정부와 여타 경제 간 순계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고안된 반면, SNA는 생산과 경제의 모든 부문들간의 상호관계의 포괄적 측정을 포함한 여타의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다.

다음 호에서는 GFS 주요 보고서인 ‘운영보고서(Statement of Operations)’,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및 이를 구성하는 항목들을 설명하는 제5장부터 제7장까지의 내용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

※ 본 뉴스레터의 일부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04

센터 동향

1 2014회계연도 회계·결산지원단 간담회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6월 1일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로 열린 2014회계연도 결산지원단 간담회를 지원하였다. 결산지원단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실무 교육을 이수한 직후인 지난 2015년 1월부터 각 중앙관서에 배치되어 결산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국가결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중앙관서의 결산 담당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회계·결산지원단 간담회, 6월 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간담회에는 중앙관서 결산지원단 29명과 기획재정부 재무회계팀 등 업무관련자 14명, 총 43명이 참석하였다. 기획재정부 재무회계팀 이호모 과장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유태오 실장은 인사말씀에서 “국가결산의 차질 없는 수행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국가회계 발전을 위한 허심탄회한 의견 개진”을 당부하였다.

간담회에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윤성호 연구원은 결산지원단이 작성한 『재무결산수행 결과보고서』 및 결산지원단 의견서 분석을 바탕으로 결산지원단 운영결과와 함께 향후 개선 과제들에 대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각 중앙관서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한 9명의 결산지원단은 업무 수행 중 겪었던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각각 발표를 진행하였다. 결산지원단의 사례발표는 dBrain시스템상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 결산지원단 운영 및 교육 관련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사례발표에서는 국가결산이 향후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국가결산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 재무회계팀과 공동으로 dBrain시스템 개선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기타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2015회계연도 결산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2 국고보조사업 회계관리체계 개선 연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 수탁연구과제로 「국고보조사업 회계관리체계 개선 연구」 과제를 2015년 3월 9일부터 수행 중에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각 중앙관서에 산재되어 있는 보조금 규정을 정리하여 표준재무관리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과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와 1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수령하는 보조사업자에게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기준을 제정하는 데 있다.



〈보조금 회계관리체계 개선 연구관련 실무자 간담회, 5월 2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대회의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용역 수행기간 동안 중앙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보조금 지침을 검토하고 중앙관서 및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보조사업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각 지침의 주요 이슈에 대하여 주요 부처 및 보조사업자들과 논의(5월 2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회의실)를 거쳐 지침 초안을 마련하였고, 지침 초안에 대하여 13개 부처 보조사업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6월 12일 기재부 회의실)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자문회의(6월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EMNA 회의실)를 거쳐 국고보조금 표준재무관리지침(안), 보조금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안) 및 검증지침(안),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안),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안)을 마련하였다. 각 지침들은 최종연구보고서에 포함되어 7월 8일 기획재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3 배출권 거래제 참여지자체 재무회계규정(안) 마련 연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한국회계기준원과 공동으로 환경부 수탁연구과제인 「배출권거래제 참여 지자체 재무회계규정(안) 등 마련 연구」 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15년 1월부터 시행된 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와 관련하여 배출권을 할당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배출권 제출의무를 가지게 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적용할 예산편성운용규정과 재무회계규정을 마련하는 데 있다.

5월 13일 환경부 회의실에서 착수 보고회와 함께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되어, 5월 15일에는 행정자치부 주관 '배출권 거래제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주요 이슈를 논의하였다. 현재까지 지자체 예산 및 회계규정 관련 법제분석, 배출권 거래제 관련 회계처리기준, 국내외 사례조사, 기존 선행연구 등 문헌조사를 진행하였다.

향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배출권거래 일반기업 회계기준 제정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회계기준원과 공동연구를 통하여 기존 연구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정부회계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환경부, 행자부, 기재부 등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배출권거래제 회계처리지침(안) 및 예산편성운용규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4 비영리공공기관 재정통계 설명회 개최

기획재정부는 2015년 5월 7일(목)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와 공동으로 일반정부 재정통계 및 공공부문 부채 작성 대상인 중앙 비영리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영리공공기관 재정통계 작성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비영리공공기관 재정통계 설명회는 '01 GFS에 따른 일반정부 재정통계 및 PSDS에 따른 공공부문 부채 작성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기획재정부 예우영 사무관의 소개로 시작하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박윤진 재정통계팀장의 일반정부 재정통계 및 공공부문 부채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취합된 재정통계는 향후 일반정부 재정통계 및 공공부문 부채 산출에 활용될 예정이며 관련 통계는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5 2014회계연도 재정통계 작성 지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14회계연도 '01 GFS(Government Finance Statistics)에 따른 일반정부 재정통계 및 PSDS(Public Sector Debt Statistics)에 따른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5월 7일 '비영리공공기관 재정통계 설명회'를 개최한 후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비금융공기업을의 재정통계 작성을 지원하고 정합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2014회계연도 일반정부 재정통계 및 공공부문 부채는 기획재정부에서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6 2014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 지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30개 공기업의 총괄재무제표,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분석, 지표작성 및 기관별 결산서 취합 교정 및 2014회계연도 공기업 총괄 결산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및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또한, 국회제출용 준정부기관 총괄 결산서 작성을 위해 81개 준정부기관의 결산서의 회계처리 오류 및 누락사항 파악 등의 사전검토작업에 착수하였다.

그 외에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질의 회신을 계속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올바른 정착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서 인정하지 않는 회계 관습 및 과거 특례적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현행기준에 위배되어 적용되는 회계특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7 국가회계재정통계 자문위원회 개최

우리 센터는 국가회계재정통계 자문위원회를 4월 23일 서울역 대우재단빌딩 PEMNA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금회 자문위원회에서는 센터의 '15년도 연구계획, 2014회계연도 재무결산 결과 보고 등 팀별 1분기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였다. 특히 현재 수행하고 있는 수시 및 용역



과제의 연구방향 및 점검사항 등과 관련하여 자문위원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으며, 이를 연구과제 수행에 적극 환류할 예정이다.

8 한국정부회계학회 춘계세미나 참석

우리 센터는 행정자치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후원하고, 인천광역시 등이 주최하며, 한국정부회계학회가 주관한 한국정부회계학회 춘계세미나(4월 10일 인천 송도)에 참석하여 사회, 발표 및 토론에 참여하였다. 특히 김완희 소장의 사회로 이루어진 4세션에서는 박윤진 재정통계팀장과 김은영 국가회계팀장이 각각 「재무회계정보를 활용한 재정통계 산출 방안」, 「중앙정부 발생주의 회계도입의 영향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김동욱 제주대 교수, 심재영 한국방송대 교수, 전중열 서울산업대 교수 등의 토론진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우리 센터에서는 국가회계 및 재정통계 관련 이슈에 대해 유관 학술단체, 외부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여 업무역량 강화는 물론 정책 동향 및 성과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05

공지사항

1 『재정통계 매뉴얼 2014』(GFSM 2014) 한글판 배포 안내

한국조세재정연구원(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는 IMF의 『재정통계 매뉴얼 2014』(GFSM 2014) 한글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책자는 재정통계 관련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담당자, 통계 작성 실무자인 공공기관 담당자, 외부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며, 센터 홈페이지(또는 연구원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책자를 수령하지 못하신 분들 중 원하시는 분에 대해 센터 홈페이지에 주소, 연락처 및 간단한 이력을 남겨주시면 책자를 주소지로 배송해 드릴 계획입니다.

2 뉴스레터 구독 신청 안내

정기적으로 뉴스레터 구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①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에서 가입신청 또는 ② Tel. 044-414-2265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에는 국가회계 관련 뉴스, 발간자료, 기준 및 법령, 세미나 및 교육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평소 국가회계에 관하여 궁금했던 사항을 질의할 수 있는 코너와 FAQ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종 발행물과 세미나자료, 연구보고자료 등 국가회계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중이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편 집

- 김완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총괄)
 김은영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장(국가회계 총괄)
 박윤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장(재정통계 총괄)
 이남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 전문연구원(국가회계 센터동향)
 임정혁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 연구원(국가회계 해외동향)
 모완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 연구원(국가회계 국내동향)
 김민정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 연구원(국가회계 해외동향)
 이진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 연구원(재정통계 국내/해외동향)
 엄기중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 연구원(재정통계 센터동향)
 유영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 연구원(재정통계 센터동향)
 이계형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 전문연구원(공지사항)